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안태준 · 전용기 · 문진석

정준호 · 맹성규 · 염태영

이연희 · 전현희 · 최혁진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 · 임금체불 · 산업재해 · 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 · 과태료 ·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 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참여제한 기간은”을 “참여
제한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에 한정하고, 그 기간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